

【 3 】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3. 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무쏘픽업, 코란도 밴 등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,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하여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, 「임대주택법」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가.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(무쏘픽업, 코란도 밴 등) 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사항을 반영(안 제2조, 안 제3조)
- 나. 「임대주택법」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대한 관련 조문 수정 (안 제12조)
- 다.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세율이 더 낮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면규정 삭제 (안 제15조)
- 라.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구분이 토지·건축물에서 토지·건축물·주택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(안 제16조)
- 마. 「화물유통촉진법」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이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(안 제22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가.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
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

제12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” 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중 “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” 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 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중 “토지 및 지상 건축물” 을 “토지·지상 건축물·주택”으로 한다.

제22조중 “화물터미널 및 창고용” 을 “창고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배기량 2,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3조(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)	제3조(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)	제3조(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)	제3조(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)
① (생략)	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	① (현행과 같음)
1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. 12.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	1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. 12. 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	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)	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 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)
2. ~ 4.(생략)	2. ~ 4.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(생략)	②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① (본문생략)</p> <p>다만, 공동주택을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「공무원연금법시행령」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 <p>2. ~ 3.(생략)</p>	<p>제12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①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-----</p> <p>1.-----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 -----</p> <p>2. ~ 3.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본문생략)</p> <p>다만, 공동주택을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「임대주택법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「공무원연금법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(공동주택의 부속</p>	<p>② (본문 현행과 같음)</p> <p>-----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-----</p> <p>1.-----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 -----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
제22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 과세 기준일 현재 「화물유통 촉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<u>화물터미널 및 창고용</u> 에 직 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 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	제22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<u>창고용</u> ----- ----- -----